

금융위기 전후 EU 재정관리 주요 변화

2012. 5. 7

◇ 개 요 ◇

- EU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EU 차원의 재정관리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
 - EFSF 및 ESM 출범, 신재정협약 정상화의 등*
- * 조세연,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참고
- 이에 따라 위기 전후 EU 재정관리의 주요한 변화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EU 재정준칙의 주요 변화 위주로 본고를 작성
- EU 재정준칙은 EU 통화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 (안정성장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rogramme) 으로 실시 (1997년)
 - 재정적자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내 유지, 중기재정목표 달성 등
 - EU 통화통합을 위해 설정한 주요 경제변수의 수렴조건의 하나로서 제정
 - 특히 재정적자 GDP 대비 3% 준칙을 위반할 경우 초과적자시정조치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실시
- 유럽통화동맹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출범 이후 유로지역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에 따라 준칙 완화 (2005년)
 - 중기재정목표 및 EU 집행위의 피드백 과정에서 완화된 기준 마련
-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EU 차원의 위기 대응 비용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재정관리 강화 (2011년)
 - 중기재정목표 강화, 재정준칙 확대 (국가채무도 포함),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통계 감독 강화 등
- 또한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 요인이 EU 체제의 거시경제 불균형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시정조치도 마련 (2011년)

1. 안정성장협약 제정 (1997)

가. 배경

□ EU 통화통합 과정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함

- EU 통화통합은 각 회원국이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주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공동의 단일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토록 하는 것
- 이 과정에서 EU는 보조성의 원칙에 근거한 이원적인 정책통합을 지향
 - 보조성의 원칙은 회원국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공통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
 - 통화통합이 통화주권 포기 없이는 힘든 반면, 재정정책은 단일시장 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별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으로 삼지 않음
-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수렴기준의 하나로써 회원국 간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체결하여 준수토록 함

<참고> 경제수렴기준

- ① 물가 : 최근 1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EU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 1.5%p 이내
- ② 재정 : 평가 당시 재정수지가 '과도한 재정적자 (excessive deficit) 상태'에 있지 않을 것. 즉 재정적자가 명목 GDP의 3% 이내이고 국가채무가 명목 GDP 60% 이내일 것
- ③ 금리 : 최근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EU회원국의 평균 명목장기금리 + 2.0%p 이내
- ④ 환율 : 최소한 최근 2년동안 자국통화와 유로화간 환율을 변동허용폭 (중심환율대비 $\pm 15\%$) 이내로 유지하고 회원국 주도로 자국 통화의 중심환율을 평가절하한 사례가 없을 것
- ⑤ 법규 수렴기준 : 회원국의 국내법이 EU조약과 상충되지 않을 것. 특히 회원국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 중앙은행이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일부분이 되도록 허용할 것

나. 주요 내용¹⁾

- 각 회원국은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의 재정수지에 대한 중기재정목표(Medium Term Objectives)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
 -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유럽통화동맹) 회원국은 재정안정계획 (Stability Programme)을, 비회원국은 경제수렴계획 (Convergence Programme)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회원국의 실천계획을 전년도 각 회원국에 권고한 일반경제정책지침 (Broad Economic Policy Guidelines; BEPGs)과 비교 평가
 - 더불어 당해연도 BEPGs 역시 작성하여 회원국에 권고
- 중기적으로 균형에 가깝거나 혹은 흑자인 재정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재정적자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 미만 유지
 - 예방적 측면 (the preventive arm) : 회원국들에 과다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조기경보하는 기능
 - 교정적 측면 (the dissuasive arm) : 초과적자시정조치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이하 EDP) 를 마련하여 GDP의 3%를 초과하는 적자가 발생한 회원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 제재를 부과
 - 제재조치는 무이자 보증금 부과 등이 있으며,
 - 지표개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기준치에 근접하는 경우 및 일시적·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심각한 경기후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EDP의 예외로 간주

1) 박형수, 2010. 1, 「재정건전화 이슈와 EU의 재정준칙」 p. 11~15

<참고> 용어정리 (Protocol No. 12)

- 재정적자 3%의 의미 : 정부 적자의 목표(추정)치 또는 실제치를 시장가격 기준의 국민총생산에 대비하여 산출한 비율
- 국가채무 60%의 의미 : 정부 채무를 시장가격 기준의 국민총생산에 대비하여 산출한 비율
- 이 때 정부는 일반정부, 즉 중앙정부 + 지방정부 (regional or local) +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Economic Accounts의 정의를 따름
- 재정적자라 함은 ESIEA에 따른 정부의 순차입(net borrowing)을, 채무라 함은 매 회기연말 명목가격으로 산출한 총채무 (total gross debt)를 부문 또는 정부간 거래를 최초 주문서(the first indent)에 기초하여 상계(consolidate)한 값을 의미

□ 건전재정을 위한 보완책으로 각 회원국의 채무는 회원국 각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제금융 불가 조항 보완
- ECB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당좌 대월 또는 기타 신용공여 등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제공 금지
- 정부나 유럽공동체의 기관 또는 기구가 공공부문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 금지 등

2. 안정성장협약 개정 (2005)²⁾

가. 배경

- EMU 출범 이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필요에 따라 준칙을 완화
 - 안정성장협약 준칙인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는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5%를 가정한 것이나, '01-'04년 동안 유로지역 성장률은 3.5% (박형수, 2010)
 -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 EU 핵심국인 독일 및 프랑스의 준칙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유예되는 등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집중
 - '02년 독일, 프랑스의 초과적자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사회에 EDP 실행을 권고하였으나 부결
 -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보다 많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가중다수결 투표 방식에 의한 결과
- 인구고령화 등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국가채무 확대 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사전 대비할 필요

나. 주요 내용

- 중기재정목표 설정·달성 요건을 완화 (EU 상임위 규정 No. 1055/2005 (2005. 06. 27))
 - 기존의 '균형에 근접하거나 흑자재정' 요건이 'GDP 대비 1% 적자, 균형 또는 흑자' 등으로 완화
 - 초과적자의 예외조건이 기존의 '실질 GDP 연간 2% 이상 하락'에서 '음의 실질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질성장률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누적된 생산량 손실'로 확대

2) 박형수, 2010. 1, 「재정건전화 이슈와 EU의 재정준칙」 p. 16~18

- 재정 지속가능성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주요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경우 중기 재정목표를 재고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의 일시적 이탈 역시 허용
 - 특히 완전 의무적립 방식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개혁 조치가 이에 해당
 - 다만, 전반적인 재정이 안정된 가운데 적자 수준이 적자상한을 심각하게 초과하지 않고 채무수준은 채무상한 이내여야 함

□ EU 집행위의 피드백 과정에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

-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 고려하는 ‘모든 기타 관련 요인’을 ‘국제적 결속 촉진’ ‘유럽 정책목표 달성’ 등으로 명시
 - 군사적 지출이나 개발원조를 적자 계산시 제외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 통일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독일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이사회가 각 회원국에 권고 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일회성 또는 임시 조치를 제외하고 재정수지를 매년 GDP 대비 0.5% 이상 개선’하는 것이어야 함

□ 이 외에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안정·수렴 프로그램에 반영

- 동일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초로 EU 회원국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The Sustainability Report)’ 발간

3. 안정성장협약 강화 (2011)

가. 배경

-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이에 대한 EU 차원의 위기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EU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 부동산 산업 비중이 컸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에 따른 금융부문 부실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단행하여 재정악화(스페인, 아일랜드)
 - EU 통합 이후 저금리 혜택을 본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외 차입을 확대하고 이를 생산부문 투자보다는 소비 및 복지혜택 강화에 투입 (그리스, 포르투갈)
 - 통화 통합 이후 독일 금리 수준인 4% 미만으로 수렴된 바 있으며, 이후 그리스는 '07년 GDP 대비 145.2%까지, 포르투갈은 202.2%까지 대외 차입이 확대 (총외채 기준)
 - 특히 그리스의 경우 재정악화를 은폐 왜곡하기 위한 통계 왜곡이 드러나는 등 EU의 회원국 재정통계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
 - 이에 대한 EU 차원의 재정위기 지원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면서 EU 안정성장협약 등 기존의 재정준칙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

나. 주요 내용

-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재정목표, 재정준칙, 위배 시 제재조치 등 모든 절차에 걸쳐 내용 강화³⁾

3) EU Council, 2012. 1,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Ireland,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Hungary,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and the Kingdom of Sweden」, Title 3 Fiscal Compact

(중기재정목표)

- 일반정부 재정수지 1% 적자, 균형 또는 흑자 → 균형 또는 흑자
 - 이는 지난 2005년 '1% 적자, 균형 또는 흑자' 등으로 완화된 요건이 다시 강화된 것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0.5% 달성시 충족 가능한 수준
- 협약 당사국들은 EU 집행위가 설정한 time-frame 이내에 중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기재정목표 또는 이의 달성 경로로부터의 이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
 - (요건)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보다 상당히 낮을 경우 (and) 장기 재정안정성이 충분한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1% 이내인 경우에 상응)
 - (예외적 상황) 일반정부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불능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or) 개정 SGP에서 규정한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시 (단, 중기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

(재정준칙)

- 기존의 재정적자 기준에 더하여 국가채무 상한도 포함
 - 국가채무 상한은 GDP 대비 60%로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치와 동일
-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 재정적자 GDP 대비 3% + 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내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채무의 목표치-실적치'가 연평균 1/20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
- 경제, 예산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포함한 시정조치가 EU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며 시행 절차는 기존의 SGP 감독 절차에 따름 (아래 제재조치 참고)

- 협약 당사국은 국제 발생시 사전에 EU 위원회 및 집행위에 보고

(제재조치)

- 중기재정목표 또는 이의 달성 경로로부터의 심각한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한 내에 교정하는 조치를 자동 시행
- 초과적자 또는 국가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 → 보증금 및 벌금 강제 부과 등의 단계를 거쳐 제재

① 시정조치 권고

- 일차 시정조치는 기존의 SGP와 같이 EU 집행위가 초과적자 또는 초과채무 시정조치를 권고하면 EU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
- 단, EU 위원회의 결정 방식은 가중 다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하는 역투표 방식(reverse voting system)
- 이는 기존의 가중 다수결 투표 방식 시행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제재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

②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

- 시정조치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 또는 여타 협약 당사국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동 조치를 회부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③ 보증금 및 벌금 강제 부과

- 법적으로 강제되는 시정조치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 또는 여타 협약 당사국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보증금 또는 벌금을 강제로 부과토록 할 수 있음
- 보증금 또는 벌금액은 해당국 전년 GDP 대비 0.1% 이내에서 부과되며,
- 유럽안정메커니즘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12.7월 발효) 또는 EU의 일반예산으로 편입

<참고> (무이자) 보증금 부과 이전 단계의 EDP 시행 촉구 조치⁴⁾

- EDP 시행 여부 공개, EDP 시행 현황 보고 요구, 국채 및 증권 발행 사전 EU 위원회에 관련 보고,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에 해당국에 대한 대부 정책 재검토 요청 등
- 이러한 제재조치는 EU 위원회가 EDP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 무이자 보증금 및 벌금은 기존에도 있던 정책이나 한 번도 실행된 바는 없음

□ 다만, 초과적자 여부 판정시 금융위기 관련 지출을 예외사항으로 간주하는 등 다소 기준 완화

- 기존 ‘국제적 결속 촉진’ ‘유럽 정책목표 달성’ 뿐 아니라 ‘회원국 간 금융안정 자금 지원’ ‘금융위기 시 금융안정운영자금’ 등으로 예외사항 확대 적용

□ 회원국의 재정통계 보고를 강화하여 통계 은폐·왜곡 방지⁵⁾

- 각 회원국은 연 2회 유럽통계청 (Eurostat)에 재정통계 및 재정책임기관을 보고할 의무 (4월, 10월 초 이전)
 -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의 재정통계 목표치 및 실제치를 보고하고,
 - 초과재정적자 발생의 책임이 어느 기관에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제공
- 유럽통계청은 ESA 95를 준용하여 통계 실적치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회원국은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

* 회계 기준의 준수 여부, 완성도, 신뢰도, 적시성, 일관성 등

** 국민계정 데이터, 통계 항목, EDP 통지 자료 및 관련 질문지와 답변서 등

4) EU, 2008.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Three : 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Title 8 :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Chapter 1 : Economic Policy, Article 126 (p. 0099~0102)

5) EU, 2009. 5, 「Council Regulation No. 479/2009 of 25 May 2009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Annexe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Ch. 2~3

- 유럽통계청은 동 평가결과를 유럽의회 및 EU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이와 별도로 각 회원국은 통계방법, 절차 및 소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통계청 및 대외 제공

<참고> ESA 95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95)

- 1979년부터 지속되었으며, 통계 개념, 정의, 분류, 회계기준 등에 관한 EU 차원의 규정
- 대부분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of the United Nations (1993 SNA)를 따르나 EU 특성에 따라 통계 표현 방법 등은 차이
- 법적 기반을 갖추어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Council Regulation으로 개정 (1996. 6. 25)

☐ 또한 재정통계 관리를 위한 실사를 실시하여 통계 은폐·왜곡을 방지하고 책임 강화⁶⁾

- 유럽통계청은 방법론 실사 및 면담을 위하여 각 회원국 통계기관을 방문
- (면담 방문, dialogue visiting) 정기적으로 데이터 점검 및 품질 평가, 방법론 평가, 통계작업과정 및 소스에 대한 논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위하여 방문
- (방법론 실사) 부정기적인 방문 행사이며, 보고된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 심각한 위험이나 잠재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실시

* 특히 방법론, 개념, 분류기준 등

- 실적치 산출 과정 및 정부 회계 등을 점검하여 실적치의 품질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
 - 이를 위해 유럽통계청은 다른 회원국이 추천한 해당국 국민계정 전문가 및 집행위 여타 부서의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국민계정 전문가 후보 리스트는 초과적자 보고 책임이 있는 해당국 기

6) 상동

관이 양식에 맞추어 제출

- 또한 회원국은 관련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집행위 인력 및 여타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의무
 - 다만 대외비 자료의 경우에는 유럽통계청에만 제공

□ 역투표 방식 (reversed qualified majority voting)을 도입하여 결정사항의 집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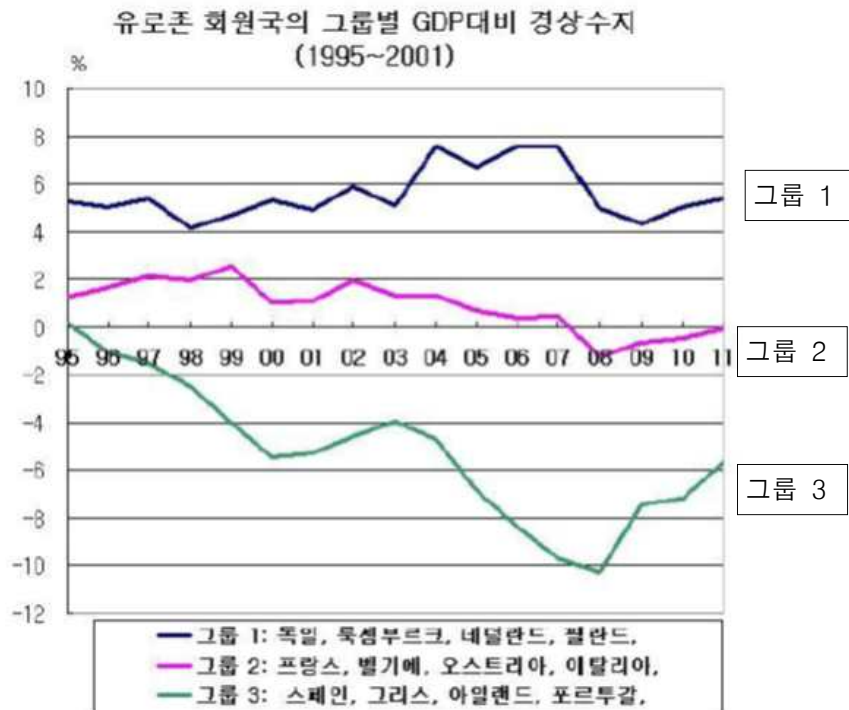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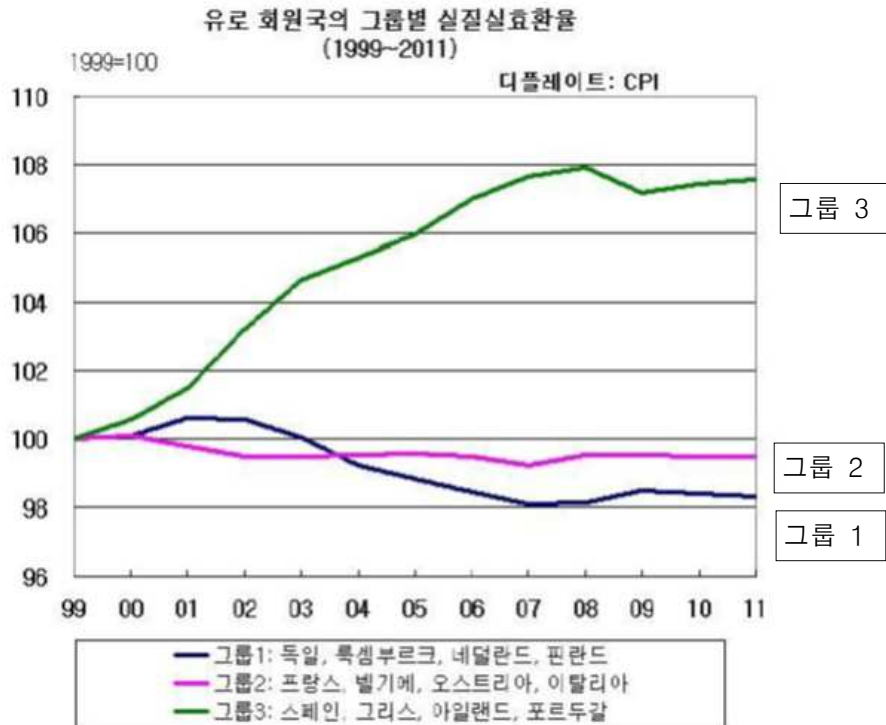
- 투표 방식을 역의 가중다수투표 방식, 즉 가중다수의 반대가 없으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재조치 통과 가능성 제고
 - 보증금 부과 등 제재조치 결정은 기존에 EU 위원회의 가중다수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해 제재조치가 부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는 EU 위원회의 역할은 약화되고 제재조치를 권고하는 EU 집행위의 권한이 강화됨을 의미

4. 경제감독 강화 (2011)

가. 배경

-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EU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EU 차원의 시정 조치가 필요
 - 실질실효환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출보다 수입이 과다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해당국들이 이를 해외차입으로 보전하여 대외부채가 증가한 것이 재정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이는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단일통화로 통합된 데 따른 구조적인 결과일 뿐 아니라 현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해법이 필요

<그림 1> 유로지역 회원국 실질실효환율 및 경상수지 (그룹별)



* 경제규모 작은 4개국(시프러스, 말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제외)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로존 위기의 원인, 전개 그리고 전망』 (발표자료)

- 단, 단일통화체제를 거스를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최선은 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 격차의 최소화라는 것이 EU의 방침
- 이에 따라 관리감독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를 마련키로 결정

나. 주요내용⁷⁾

- 거시경제 점검표(scoreboard)를 통하여 거시경제 불균형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준치(thresholds)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심층 분석을 거쳐 예방적 경고 및 교정적인 조치 시행
 - 동 점검표는 1차적인 과정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지적된 불균형 요소가 실제로 심각하게 존재하느냐 여부는 추후 심층 분석을 통해 판단
 - 지표에 의한 단순 점검뿐 아니라 경제적인 맥락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여 「메커니즘 경고 보고서 (AMR; Alert Mechanism Report)」를 통해 결과 발표*
 - * 동 결과는 상임위 검토를 거쳐 집행위가 회원국에 적절한 피드백을 시행
 - 불균형 여부 심층 분석은 실증분석 뿐 아니라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며, 특히 EU 여타 회원국에 대한 외부효과 및 해당국의 구조조정 역량도 포함
 - 경제적인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와 상임위는 사전적인 시정조치를 권고 (Article 121.2 of the Treaty)하여 추가적인 문제의 확대를 방지
 - 이는 유럽학기 (European Semester) 의 일환으로 실시
 -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와 상임위는 사후 교정적인 조치로 초과불균형시정조치(EIP;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실시
 - 이 경우 해당국은 시행 일정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명확한 교정시행계획 (CAP; Corrective Action Plan)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 동 권고사항은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일정의 일환으로 일개 연도의 정책 사이클 내에서 진행

7) ECOFIN 홈페이지 및 EU, 2008.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Three : 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Title 8 :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Chapter 1 : Economic Policy, Article 121 (p. 0097~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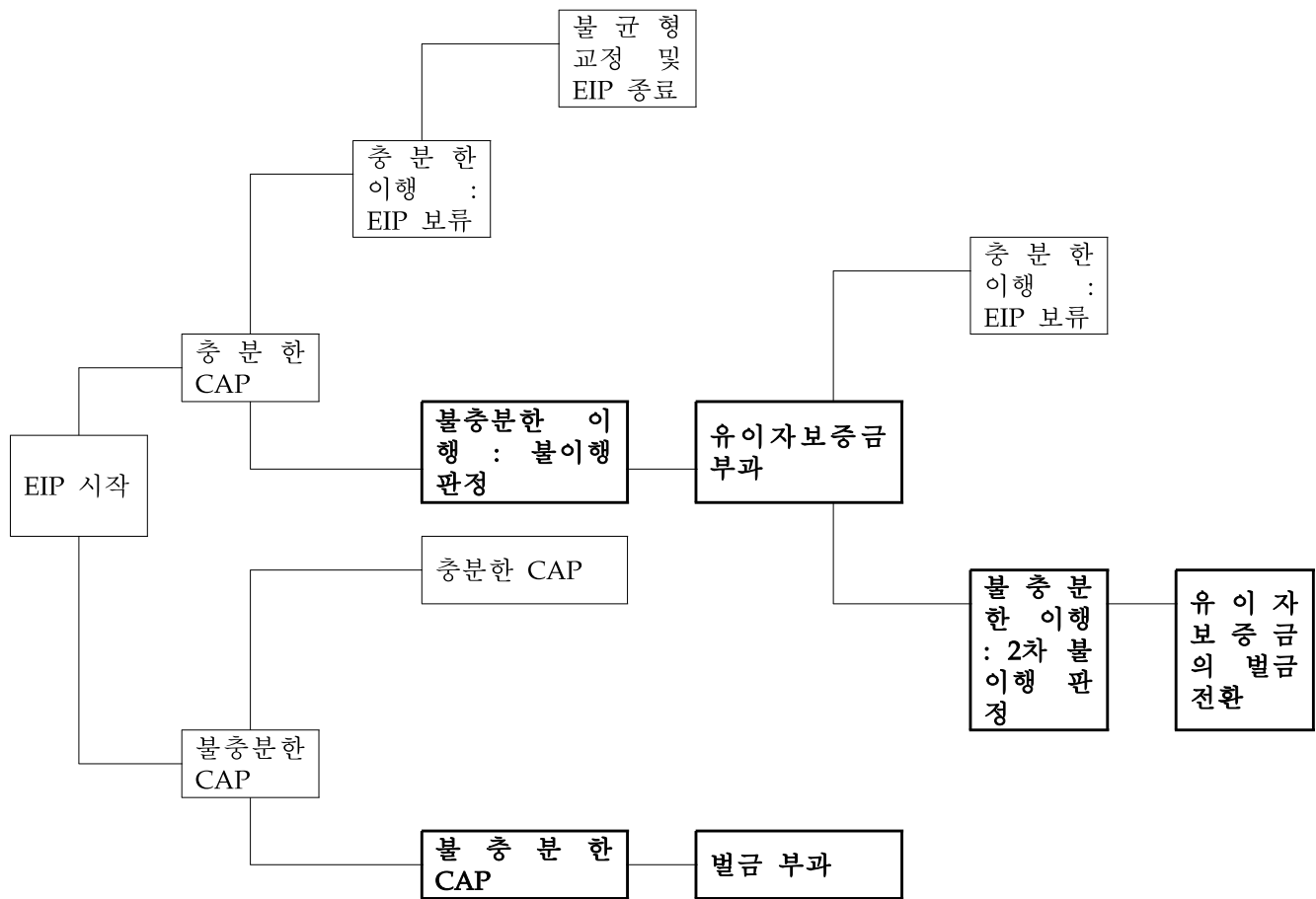
- EU 상임위는 해당국이 제출한 CAP가 부적절할 경우 반력하게 되며, 재차 부적절할 경우 벌금 부과 (GDP 대비 0.1% 규모)
 - EIP 시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이자 보증금이 부과되며, 재차 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벌금 부과
 - 벌금은 GDP 대비 0.1% 이내
 - 벌금 부과시 추가적인 강제 제재조치가 결정될 수 있음
- 교정적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재조치 등 주요 의사결정은 역투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짐
- 이는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EU 상임위가 최종 확정을 결정할 때 투표 방식을 의미
 - 역의 가중다수투표는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이 전달된 후 10일 이내에 가중다수의 반대가 없으면 시행 결정되는 방식
 - 이는 역의 가중다수투표가 적용되는 조치들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시행됨을 의미

<표 1> 거시경제 점검지표 및 점검 기준치

점검 지표	기준치
직전 3개년 GDP 대비 경상수지 평균 변동 추이	GDP 대비 -4~6%
GDP 대비 순대외투자비율	GDP 대비 35%
직전 5개년 수출시장점유율 %p 변동	△6%p
직전 3개년 명목단위노동비용 %p 변동	(유로회원국) 9%p (비유로회원국) 12%p
직전 3개년 실질실효환율 %p 변동 (35개 산업국에 대비, HICP/CPI 기준)	(유로회원국) ±5%p (비유로회원국) ±11%p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비율	GDP 대비 160%
GDP 대비 민간부문 신용유입비율	GDP 대비 15%
Eurostat 소비 가격지수 대비 부동산가격 변동 (전년대비)	6%
GDP 대비 일반정부부문 채무비율	GDP 대비 60%
직전 3개년 실업률 평균 변동 추이	10%

※ 출처 : ECOFIN 홈페이지

<그림 2> 교정적 조치 과정



※ 출처 : ECOFIN 홈페이지 / * 굵은 체는 역투표 방식이 적용되는 조치

참고자료

박형수, 2010. 1, 「재정건전화 이슈와 EU의 재정준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로존 위기의 원인, 전개 그리고 전망』 (발표자료)

EU, 2008.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Protocol No. 12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p. 0279~0280

EU Council, 2012. 1,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between the Kingdom of Belgium,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Kingdom of Denmar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Republic of Estonia, Ireland, the Hellenic Republic, the Kingdom of Spain, the French Republic, the Italian Republic, the Republic of Cyprus, the Republic of Latvia,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Hungary, Malta,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Republic of Austria, the Republic of Poland, the Portuguese Republic, Romania, the Republic of Slovenia, the Slovak Republic, the Republic of Finland and the Kingdom of Sweden」, Title 3 Fiscal Compact

EU, 2008.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Three : 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Title 8 :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Chapter 1 : Economic Policy, Article 126 (p. 0099~0102)

EU, 2009. 5, 「Council Regulation No. 479/2009 of 25 May 2009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on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Annexe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Ch. 2~3

EU, 2008. 5,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Part Three : Union Policies and Internal Actions, Title 8 :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Chapter 1 : Economic Policy, Article 121 (p. 0097~0098)